

기술정책 협동과정 내규

2021년 1월

연세대학교 대학원
기술정책 협동과정

목 차

제1장. 총칙	1
제2장. 입학	1
제3장. 등록, 휴학, 복학	3
제4장. 교과목 구성, 수업 및 학점	3
제5장. 논문제출 자격시험	4
제6장. 학위논문	5
제7장. 조직	9
제8장. 장학금	10
제9장. 준용	11
부칙	1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내규(內規)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술정책 협동과정 (이하 “본 학과”라 한다)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학과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술정책 협동과정(Graduate Program in Technology Policy)이라 부른다.

제3조(교육목표) 본 학과는 기술정책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정책 개발능력을 고도화 하고, 과학기술적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국가 인재를 양성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며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.

제4조(수여학위) 본 학과는 공학 석사, 공학 박사, 기술정책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.

제5조(학생선발) 본 학과는 학기단위로 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입학

제6조(입학전형) 본 학과의 입학전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 하고, 서류평가 및 구술평가에 의한 전형으로 한다.

제7조(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주임교수의 역할) ① 주임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필요한 경우 학과 입시 내규를 제정·개정한다.

② 주임교수는 대학원 입시관련 학칙 및 내규를 확인하고,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공문과 지침에 따라 대학원 입학전형 사무를 수행한다.

③ 주임교수가 신규 임명되는 경우, 「사무인계·인수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입시 등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.

제8조(평가배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) ① 본 학과의 서류평가는 200점 만점으로 세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
2.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0점

② 본 학과의 구술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세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에 대한 지식 30점
2.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0점

3. 전공에 대한 적성 40점

③ 서류평가 결과 및 구술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.

1. 구술평가 평균 성적이 높은 지원자
2. 서류평가 평균 성적이 높은 지원자
3. 서류평가 및 구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지원자
4. 모든 평가항목의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 학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되 세부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.

제9조(입학전형 서류평가) ① 입학전형 서류평가를 위해 주임교수는 학과 운영위원회와 학과교수 중 3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규정 및 평가지침을 안내한다.

② 각 평가위원은 서류심사를 수행하고, '서류심사 평가서'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, 주임교수는 '서류심사 평가서'를 바탕으로 지원자별 평균 성적을 계산하여 '서류심사 평균 성적표'를 작성한 후 서류심사 사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서류심사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구술시험 대상자 또는 최종합격자를 정하며,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④ 주임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서류평가 결과를 '입학전형 서류심사 결과표'에 기재하고 본인과 학장의 날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한다.

⑤ 서류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서류심사 평가서, 서류심사 평균 성적표, 학과위원회 회의록은 문서 보존을 위해 주임교수 및 학장의 내부결재를 거쳐 학과에서 원본 및 사본을 보관하고, 원본 서류는 대학원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중앙서류보관소에 이관하여 10년간 보관한다.

제10조(입학전형 구술평가) ① 구술평가를 시행할 경우, 주임교수는 학과 운영위원회와 학과교수 중 3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규정 및 평가지침을 안내한다.

② 각 평가위원은 지원자를 평가하고 '구술시험 평가서'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, 주임교수는 '구술시험 평가서'를 바탕으로 지원자별 평균 성적을 계산하고 '구술심사 평균 성적표'를 작성한 후, 구술시험 사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총점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고,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정한다.

④ 주임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구술시험 결과를 '입학전형표'에 기재하고 본인과 학장의 날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한다.

⑤ 구술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시험 평가서, 구술심사 평균 성적표, 학과위원회 회의록은 문서 보존을 위해 주임교수와 학장의 내부결재(사본 파일 첨부)를 거쳐 학과에서 원본 및 사본을 보관한다. 원본 서류는 대학원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중앙서류보관소에 이관하여 10년간 보관한다.

제3장 등록, 휴학, 복학

제11조(등록)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4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,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석·박사 통합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6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,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(휴학) ①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(4학기),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군복무 기간, 출산 및 육아 기간(1년)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.

③ 신입생,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. 단,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.

제13조(복학) 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장 교과목 구성, 수업 및 학점

제14조(교과목 구성) 본 학과의 교과목은 개설한 과목들 중에서 강좌내용을 고려하여 변경, 통합, 신설, 폐지 등 재조정하도록 한다.

제15조(교과목 신설)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【신규교과목 개설제안서】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6조(교과목 폐지) 2년 동안 한 번도 개설되지 않았거나, 개설할 계획이 없는 교과목은 폐지할 수 있다.

제17조(교과목 운영) ① 개별연구지도 I, II(석사과정) 및 개별연구지도 IV, V, VI(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과정)는 매 학기 개설한다.

② 개별연구지도 과목은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에 대해 최고 6학점까지 인정이 되고, 석·박사통합학위과정에 대해서는 8학점까지 인정된다.

③ 각 개별연구지도 과목은 2학점이며,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인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를 수행한다.



제18조(수강과목) ① 학생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학생은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수강과목을 선택한다.

② 공과대학 소속 대학원생 전원(내국인·외국인 공통)은 학기별 개설되는 「연구윤리」 또는 「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」 가운데 1개 교과목을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1.26.>

제19조(수료 및 이수학점)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하고, 이 중 전공학점은 21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석·박사통합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하고, 이 중 전공학점은 4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학생은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규정에 따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타 학과에서 개설된 대학원 과목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전공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.

제20조(학기당 이수학점) ① 학생은 매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② 연구등록학기를 제외하고, 학생은 학기당 최소 1과목 이상을 신청해야한다.

제21조(학점등급) 본 학과의 학점등급은 A+, A0, A-, B+, B0, B-, C+, C0, C-, F, W(Withdraw), P/NP(Pass/NonPass)로 구분한다.

제22조(이수학점 인정) ①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-(1.7)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.

②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.0(4.3만점)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국내·외의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각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그 범위는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3조(학사경고)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.0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.

제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

제24조(종합시험 자격)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, 지도교수를 배정받고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신청한 자로서 【석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원서】를 공고된 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.



-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,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신청한 자로서 【박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원서】를 공고된 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.
- ③ 석·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,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48학점 이상 신청한 자로서 【박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원서】를 공고된 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 학생으로 한다.

제25조(종합시험 시기) 종합시험은 학기 중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험일시는 시험일 2주전까지 학과 주임교수가 공고한다.

제26조(종합시험 시험과목)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,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.

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,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3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. 단, 본 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석사학위 취득과정에서 선택한 종합시험 과목을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중복하여 선택할 수 없다.

③ 석·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, 본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5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.

제27조(종합시험 시행 및 합격) 종합시험은 Class In 형식으로 시행하고,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,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.

제28조(외국어시험) ① 외국어시험은 대학원이 인정하는 TOEFL, TOEIC, TEPS 점수로,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TOEFL(PBT:500점,CBT:197점,IBT:73점) 이상, TOEIC 580점 이상, TEPS 450점 이상을 받으면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
② 학업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1. 해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해외에서 3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자로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③ 학과 외국어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

제6장 학위논문

제29조(논문지도교수 배정) ① 본 학과의 학생은 제2학기가 끝나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선택하여야 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공과대학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, 본 협동과정의 학사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 내 전임교원으로 한다.

제30조(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)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【학위논문 연구계획서】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,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학위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31조(학위논문 양식 및 규격)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

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논문의 영문작성을 의무화한다. 단,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하에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

③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의 규격은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2조(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)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, 3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. 38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으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위원에 운영위원이 포함해야 한다.

②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, 5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. 38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으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위원에 운영위원이 포함해야 한다.

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학과교수로 정한다.

④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규를 따른다.

제33조(학위논문 예비심사) ① 예비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.

② 학생은 예비심사일 3주 전까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제출이 지연될 경우 예비심사일은 재조정되어야 한다.

③ 예비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,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,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,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,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④ 38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예비심사와 본심사사이 기간에 예비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연구로 중간심사를 받아야 한다. 중간심사는 본심사 3주 전에

통과되어야 한다. 중간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,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,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,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,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제34조(학위논문 본심사) ① 학생은 본심사 1주 전까지 학위논문 제출자격 확인서】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주임교수는 이를 검토한 후 모든 자격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만 논문제출 자격이 있음을 통보한다.

② 본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.

③ 학생은 예비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각 심사 위원들에게 본심사 2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, 이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심사는 취소되며, 심사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. 38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으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중간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각 심사 위원들에게 본심사 2주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, 이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심사는 취소되며, 심사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.

④ 석사학위과정의 경우,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, 박사 및 석·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,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,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제35조(학위논문 재심사)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, 학생은 적절한 수정·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②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.

제36조(학위논문 제출 시한) ①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,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, 석·박사 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. 단,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.

제37조(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) ① 본 학과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



2.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.0(4.3만점) 이상인 자
3. 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, 외국어시험)에 합격한 자
4.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
5.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
6.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. 다만,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7. 다음 각 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
 - 가.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2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
(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,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)
 - 나. 국내외 학술지에 1회 이상 투고 또는 게재한자
(투고증명서 또는 게재확정증명서 제출)

② 모든 학술연구발표는 주저자(제1저자, 교신저자)를 제출자격으로 인정한다. 단, 지도교수가 제 1저자인 경우에는 제 2저자까지 인정하고, 동일논문 또는 발표를 두 사람의 제출자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38조(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) ① 본 학과의 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
 2.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.0(4.3만점) 이상인 자
 3. 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, 외국어시험)에 합격한 자
 4.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
 5.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
 6.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. 다만,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7.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- 가.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
(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,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)
 - 나. 국내외 전문학술지(SCI, SCIE, SSCI, KCI)에 1편 이상 논문게재(또는 게재확정)한 자이거나, 또는 학과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(저서, 정책실현 등)을 갖춘 자
- 단, 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1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1편으로 대체 가능함

② 모든 학술연구발표는 주저자(제1저자, 교신저자)를 제출자격으로 인정한다. 단, 지도교수가 제 1저자인 경우에는 제 2저자까지 인정하고, 동일논문 또는 발표를 두 사람의



제출자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39조(석.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) ① 본 학과의 석·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54학점 이상 취득한 자
2.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.0(4.3만점) 이상인 자
3. 논문제출자격시험(종합시험, 외국어시험)에 합격한 자
4.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
5.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
6.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. 다만,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7.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 - 가.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
(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,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)
 - 나. 국내외 전문학술지(SCI, SCIE, SSCI, KCI)에 1편 이상 논문게재(또는 게재확정)한 자이거나, 또는 학과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(저서, 정책실현 등)을 갖춘 자
 - 단, 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1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1편으로 대체 가능함

② 모든 학술연구발표는 주저자(제1저자, 교신저자)를 제출자격으로 인정한다. 단, 지도교수가 제 1저자인 경우에는 제 2저자까지 인정하고, 동일논문 또는 발표를 두 사람의 제출자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40조(박사학위명칭) ① 본 학과의 박사 학위는 “공학박사”를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“공학박사” 또는 “기술정책박사” 중 학위를 선택할 수 있다.

1. 산업과기술1(TEP8001), 산업과기술2(TEP8021), 기술정책세미나1(TEP8011), 기술정책세미나2(TEP8012), 과학기술정책론(TEP8002), 기술가치평가론(TEP8003), 기술경제와정책(TEP9002), 지식경제와산업정책(TEP8004)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2.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.5(4.3만점) 이상인 자

제7장 조직

제41조(구성) 본 학과에는 학과주임교수, 공과대학 기획부학과장과 연구부학과장, 공학연구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학과교수와 연구논문지도교수로 구성된 교수회의를 둔다.

제42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의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되고, 위원장 포함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01.26.>

② 본 학과의 모든 운영 및 행정업무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책임지고 수행하며,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. 단, 회의 소집이 불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한다.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운영위원회는 회의 후, 일시, 장소, 회의 내용,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. <개정 2021.01.26.>

제43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<개정 2021.01.26.>

1. 예산 및 결산
2. 규정의 신설, 수정 및 폐지
3. 학과 교과목의 구성, 운영, 신설, 폐지에 관한 사항
4. 학과 교과목 이수 및 수업에 관한 사항
5. 대학원 학점교환 및 학점이전에 관한 사항
6. 교과목 담당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
7. 박사 입학전형 합격 사정 및 지도교수 배정
8. 박사 종합시험, 학위논문심사 및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
9. 대학원생 장학관련 업무
10. 조교 및 강사 배정
11. 기타 사항

제8장 장학금

제44조(장학금)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, 본 학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재학기간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① (목적) 본 내규는 과정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



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(사무관장) 본 과정의 장학 업무는 주임교수가 관장한다.

③ (장학금 종류 및 선발 기준) 지급되는 장학금은 매년 대학원에서 편성하는 장학금으로 연 2회 학기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선발 및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

1. 선발 기준

가.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신입생.

나.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.

다. 과정의 발전에 봉사 기여한 학생.

라. 대학원 연세우수학생II 장학생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.

2. 지급 기준

가. 해당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

제9장 준용

제45조(준용)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내규에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 규정)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자로 수정되었으며 2015년 9월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6년 2월 5일자로 제 4조의 일부 수정 및 제 37조가 신설되었으며, 2016년 3월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8년 3월 21일자로 수정되었으며 2018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8년 5월 2일자로 수정되었으며 2018년 5월 3일부터 적용한다.

제7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8년 9월 14일자로 수정되었으며 2018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
제8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21년 1월 26일자로 수정되었으며, 제2장(입학)은 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전형부터 적용하고, 제18조(수강과목)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